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73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민형배 • 이수진 • 김영배

정동영 · 홍기원 · 민홍철

김재원 • 박홍배 • 윤준병

윤종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상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중앙당 소재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합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됩 니다. 중앙당 소재지를 정당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필요가 있 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시·도당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기도 주민 수는 1,340만명이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수는 약 67만명에 불과합니다. 주민 수

가 20배가량 크게 차이 납니다. 동일한 법정당원수 기준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주민 수가 적은 지역은 시·도당창당 제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뜻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고, 시·도당 법 정당원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제 대로 반영하고, 정당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제18조제1항).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을 "중앙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1천인"을 "1천명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는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여 시·도당별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정당은 <u>수도에 소재</u>	제3조(구성) <u>중앙당</u>		
<u>하는 중앙당</u> 과 특별시·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			
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도당은 <u>1천인</u> 이상의	① <u>1천명 이내의 범</u>		
당원을 가져야 한다. <후단 신	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u>설></u>	<u>으로 정하는 수</u> <u>이 경우</u>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u>하는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는</u>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여 시·도당별로 <u>달</u>		
	리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